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
재무설계 전문자격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2019.12

□ 주요 연구결과

1. 국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현황

- ① 각 기관별 유사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가 공존하고 있으나 연계성, 호환성 부족
- ② 일시적, 단편적 자격시험제도가 많아 일부 자격의 전문성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 부족
- ③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NCS 상에 금융자문업 관련 직무 미포함

2. 해외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운영 현황

- ①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연계로 금융전문가들이 다양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② 고객의 재무 전반을 다루는 금융자문업자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역량 요구
- ③ 국가공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프로그램과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와 같이 업권별 자격시험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고려될 수 있음

3.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발전방안

- ① 금융상품자문업 도입으로 금융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재무설계 전문자격자의 자문업 진입 확대에 업의 성장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필요
- ② 금융소비자의 올바른 금융전문가 선택을 위해 전문금융업으로서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를 법으로 정의하고 금융전문가로서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의 호칭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
- ③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자격시험을 규정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조직 필요

1. 국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가. 금융자문전문인력 자격제도 비교분석

(1) 재무설계 전문인력 자격제도

- 자산관리사(FP), 종합자산관리사(IFP) 및 재무설계사(AFPK),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가 있음
- 4개 자격증 모두 금융, 부동산, 세무, 법률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자격 취득 후 일정한 유효기간을 두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이중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의 경우 지식형 평가 이외에 사례형 평가가 포함되어 있어 현장 실무역량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음

(2) 금융투자상품자문 전문인력 자격제도

- 대표적으로 증권/펀드/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펀드투자권유대행인이 있음
- 투자권유자문인력은 투자자보호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금융회사 종사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자격 취득 후 별도의 자격유효기간과 인증유지조건이 없어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함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2. 해외 주요국의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가. 미국

- 투자자문업자(Investment Adviser)와 브로커-딜러가 금융자문(financial advice) 서비스 제공
- 투자자문업자는 북미증권업협회 주관 Series 65 시험(Investment Adviser Competency Exam)에 합격하고 SEC 또는 주 감독당국에 RIA(Registered Investment Adviser)로 등록해야 함
- 다만, 다음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Series 65 시험 합격으로 인정
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 / Chartered Financial Analyst, CFA 등

나. 영국

- FSP(Financial Skills Partnership)에서 금융 관련 자격제도 관리
- 이중 금융자문자격은 FSP 인증프로그램 수료 후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 부여
- 금융자문인력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QCT(Qualification and Credit Test) 레벨4나 SCQF (Scottish Credit and Qualification Framework) 레벨8을 요구(레벨4는 학사 1년 수료에 해당)
- 자격 취득 후에는 매년 35시간 이상의 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을 받아야 함
- 영국 보험연수원에서 제공하는 “advanced diploma in financial planning”과 IFP(institute of financial planning)의 CFP program은 QCF 레벨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인정

다. 호주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에서 AFSL(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ce) 자격 부여
- 금융자문 자격은 공인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시험에 통과하면 됨
- Regulation Guideline 146에서 금융자문인력의 자질로 지식요건과 기술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심사하여 다수의 교육기관을 공인 교육기관으로 지정
- 금융자문업자 윤리강령 강화(2020년 시행 예정)
 - ① 금융자문업자는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시험을 통과하고 지속적으로 직업교육을 받아야 함
 - ② 금융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자문업자(financial adviser)나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라. 일본

- 기능검정제도에 따른 국가자격 중 금융관련 자격은 재무설계와 금융창구서비스가 있음
- 재무설계기능사는 1급, 2급, 3급의 3가지 등급이 있고, 각 등급별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으며 시험은 후생노동성 민간지정시험기관인 일본FP협회와 금융재정사정연구회에서 실시
- 재무설계기능사 자격은 민간의 재무설계 자격인 AFP/CFP 자격과 서로 연계되어 있음. 즉 국가자격인 2급 재무설계기능사 시험 통과한 후 AFP 인증교육을 수료하면 AFP 자격 부여, CFP 자격시험 합격자는 재무설계기능사 1급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바로 실기시험 응시 가능

마. 싱가포르

- 1974년 금융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금융분야의 다양한 직업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인증교육기관인 IBF(Institute of Banking and Finance)** 설립
- IBF의 자격시험 중 재무설계 및 금융자문과 관련된 자격은 CACS(Client Adviser Competency Standards)로 고소득 개인고객 대상 대면 재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자격
- **매년 최소 15시간의 재교육프로그램(CDP,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을 의무화

3.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발전방안

가. 개인재무설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 최근 금융산업은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인한 인공지능, 핀테크 등의 기술발전과 금융-비금융 간 서비스 융합 등 **환경변화**에 직면
-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양질의 **금융전문인력 확보**는 **금융회사의 중장기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체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
-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계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무설계 분야의 금융전문인력 양성**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 중 하나

나.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발전방향

- **재무설계의 국민적 확산과 전문자격 관리**
재무설계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가계 재무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CFP와 같은 재무설계 전문자격의 가계 및 국가 경제에 기여 정도 재평가 및 역할 부여
- **금융상품자문업에서 재무설계 서비스의 역할 제고**
금융상품자문업 도입으로 금융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재무설계 전문자격자의 자문업 진입 확대로 업의 성장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끝.

☞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발전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1. 금융전문자격 간 상호 연계를 통한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효율성 강화

- 해외의 경우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유기적 연계로 금융전문인력이 금융서비스 제공과 금융소비자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효율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에도 금융위원회 등에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업권별 자격 시험에 요구되는 역량을 규정하여 전체적인 자격제도의 연계가 필요함
- 특히 국내 대표적 금융전문자격인 금융투자협회 시행 자격과 한국FPSB가 인증하는 CFP와 AFPK 자격은 시험내용과 직무가 유사함에 따라 두 자격제도를 연계하여 자격취득 및 유지에 대한 중복성 사회적 비용 제거와 이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2. 금융전문자격 통합 관리 : (가칭)금융전문인력관리위원회 설치

- 해외의 경우 감독당국이나 민관합동기구가 자격에 요구되는 역량을 정의하고, 역량을 충족시키는 교육과정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금융전문인력자격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국내에도 전문성과 윤리성이 담보되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시험을 규정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조직 필요
- 금융교육협의회와 유사한 형태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금융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및 공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문분야별 자격관리 및 자격간 상호 업무호환/연계를 통합 관리하는 (가칭)금융전문인력관리위원회 설치

3.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자문업자 자격요건에 재무설계 전문자격인 CFP 자격 인정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상품자문업 신설은 현재 금융자문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험대리인 등의 자문행위를 법체계 내에 포함시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그 도입 배경이 있음

- 금융상품자문업의 신설로 독립적인 자문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자문에 대한 댓가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구비되었음
- 다만, 법안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어 시행령으로 정해질 것인 바, 그동안 관행을 따른다면 상품유형별 관련 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아 협회에 등록하는 절차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상품자문은 모든 상품유형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고객 상황별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업권별 자격시험제도 보다는 가계금융 전영역에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해외에서 이미 자문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CFP 자격을 금융상품자문업자 자격 요건으로 인정

4.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와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 용어 사용 규제

-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계금융 자산에 대한 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 되고 있음
- 해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금융전문인력 중 자문인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자문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와 금융소비자보호를 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에는 전문금융업으로서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와 그 자격자인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의 호칭 사용에 대한 특별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
- 특히 단편적인 상품판매자격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재무설계사라고 고객을 현혹하여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로 금융소비자문제를 초래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 호주, 캐나다의 사례에서와 같이 금융자문업자의 직업기준(professional standards)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가 검증된 전문가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이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끝.